

수신자 수신자참조
(경유)

제목 회의비 중 식비 사용기준 개정 관련 안내사항

1. 관련:

- 가.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 제25조 제4항
나.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 부칙 <제2023-49호, 2023.12.28.>

2.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의 부칙에 따른 제25조 제4항의 시행일이 임박함에 따라 회의비 중 식비 사용기준 개정 관련 세부사항을 안내드리며, 2024.12.1.부터 해당 조항 시행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회의비 중 식비 사용기준 개정 관련 안내사항. 끝.

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



전문기관, 대학교, 산하 공공기관 (부설 포함)

사무관

모윤우

사무관

박현욱

연구제도혁신
과장

전결 2024.11.13.

박시정

협조자

시행 연구제도혁신과-1966 ((2024.11.13.)) 접수 운영기획실-83197 (2024.11.15.)

우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, 정부세종청사 4동 / http://www.msit.go.kr
3~6층 (어진동)

전화 044-202-6951 전송 044-202-6048 / momo0202@msit.go.kr / 공개

생각은 창의적으로, 행정은 적극적으로!

회의비 중 식비 사용기준 개정 관련 안내사항

(‘24.11.13., 연구제도혁신과)

- ◆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 제25조 제4항 관련 회의비 중 식비 사용 기준의 시행에 앞서 세부 기준 안내

□ 개정 경과

- 외부 인원이 참석하는 회의 중 사전 내부결재를 받은 경우에만 식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비 사용 기준(고시) 개정(‘23.12.28.)
 - ※ 식비를 계상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(출연연 기본사업 포함)에 대해 적용
- 사전 내부결재 절차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유예하였으며, 유예기간 만료에 따라 '24.12.1.부터 시행

< 추진경과 >

일시	내용
‘23.8.22.	· 정부R&D 제도혁신 방안 마련
‘23.12.28.	· 연구비 고시 개정 (제25조제4항) - 개정 조문: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.
‘24.1.15	·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제25조제4항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' 안내
‘24.2.29.	· 연구비 고시 개정 - 제25조제4항 시행일 '24.12.1.로 유예
‘24.12.1.	· 연구비 고시 제25조제4항 시행

□ 안내사항

① 사전 내부결재 완료의 세부 적용 기준

- (내부결재의 요건)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(위임전결규정 등)에 따라 내부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승인을 득하는 것이 원칙
 - 결재문서는 회의 목적, 일시, 장소, 내용, 참석자 수(또는 명단) 등을 포함
 - 내부 전자결재시스템 및 연구비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연구개발기관에 한하여 수기 결재문서를 예외적으로 인정
 - ※ 다만, 수기 결재문서의 인정 여부 및 인정 요건은 소관 전문기관에서 판단

- '내부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승인을 득하는 것'의 범위: 사전에 계획된 회의비 사용을 인정한다는 취지에 따라 내부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한 연구책임자*의 기안** 또는 내부 연구비시스템***을 통한 식비 사용 신청도 폭넓게 인정

* 연구비 사용기준 제70조에 따른 연구책임자의 발의(또는 결재) 절차 완료는 필수 요건이며,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서 연구책임자의 결재권한을 회의비 중 식비에 대해서만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위임하는 것은 불가

** 사전에 완료된 기안이 사후에 결재되어도 승인을 득한 것으로 인정

*** 연구개발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계시스템, 경영정보시스템 등을 의미

○ (사전결재 시점) 사전 내부결재는 '회의 시작 시점' 또는 '회의비 중 식비의 실제 사용시점(연구비카드 결제 시점 등)' 중 늦은 시간까지 완료

- 단, 회의 시작 전 사전 구매 또는 사전 결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 전까지 내부결재가 완료되어야 함

○ (결재 수정) 회의 목적, 일시, 장소, 내용, 참석자 수(또는 명단) 등 사전 결재 내용이 수정되는 경우에는 회의록에 변경 내용을 반영하거나 내부결재문서의 사후 수정을 통해 변경 내용과 사유 증빙

※ 사전 내부결재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최종 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에 변경 내용과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면 적정한 연구비 집행으로 인정

○ (다과 포함 여부) 생수, 커피 등 음료에 해당하는 품목은 회의비 중 식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내부결재 대상에서 제외

② 기타 참고사항

○ 개정 사항은 시행일('24.12.1.) 현재 계속과제에도 적용

○ 기준 개정에 따라 회의비 중 식비를 사용하려는 경우 증명자료로 사전 내부결재 문서를 필수로 구비하여야 함

※ 연구비 사용기준 제25조제5항에 따라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선택 구비하는 것은 회의비 중 식비를 제외한 회의비 사용 건에만 적용